





다문화포럼 2

## 다문화, 함께 사는 세상을 열며

“탈가정 후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실태와 대안모색”

### 글로벌디아코니아센터 자료집6

- 일시 : 2015. 11. 26(목) 오후 2시
- 장소 : 글로벌디아코니아 세미나실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글로벌 디아코니아센터  
GLOBAL DIAKONIA CENTER



## 일 정 표

13:30 ~ 14:00 등록 및 자료 배부

사 회 : 김 성 태 사무총장

14:00 ~ 14:30 개회선언 ..... 사 회 자

인 사 말 ..... 손 인 응 목사  
(글로벌디아코니아센터 이사/덕수교회 원로목사)

감사패 전달

참석자소개

14:30 ~ 16:00 기조발표 및 토론

16:00 ~ 16:30 질의 응답

16:30 폐회



# 목 차

## 1. 기조발표

탈가정 후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실태와 대안 모색 .....	9
임원선 교수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2. 토 론

1) 사 회 : 성종숙 소장 (유니게의 집)

2) 토론 1 .....	43
주정 교수( 경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3) 토론 2 .....	53
최진영 소장 (서울이주여성쉼터)	

3. 부록 .....	61
-------------	----

---

## ■ 인 사 말

지난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수는 2013년 약 75만4000명, 2014년 약 79만 5000명, 2015년 1월 1일 기준 약 81만7000명(결혼이민자, 그 배우자와 자녀 포함)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결혼이민자 수 약 35만명, 자녀수 30만명, 한국인 배우자 수 35만명으로 총 100만명에 달하는 다문화가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경에서 이주민에 관한 대표적인 표현이 ‘나그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이주민이었습니다.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이주해서 출애굽 할 때까지 400년 동안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집트에서 이주민으로 살았습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이 나그네로 살았던 일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약시대 유대교에서 이 나그네인 이방인을 상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여겼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로 사람을 구분하기보다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를 칭찬하셨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꽃 피우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글로벌 디아코니아센터’(이사장 김삼환 목사)에서는 이러한 교회의 과제를 실천하고자



---

설립되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행복시대- 다문화, 함께 사는 세상을 열며’를 주제로 정기적으로 ‘다문화 포럼’을 열고자 합니다. 올해로 두 번째 갖는 2015년도 다문화포럼은 “탈가정 이후의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실태와 대안 모색“을 임원선교수(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정부다

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기조발제와 논찬으로 주정교수(경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양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와 최진영소장(서울이주여성쉼터)이 토론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포럼에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유익한 공론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런 노력들이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다문화에 모두 익숙해져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포럼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김성태사무총장과 성종숙소장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추워지는 계절에 여러분 모든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손인웅** 목사 (글로벌디아코니아센터 이사, 덕수교회 원로목사)



## 기조발제

탈가정 후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실태와 대안 모색

임원선(신한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성종숙(유니게의 집 소장) / 문정희(서울여대 대학원)



# 탈가정 후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실태와 대안 모색

임원선(신한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성종숙(유니게의 집 소장)

문정희(서울여대 대학원)

## 목 차

- I. 서론
- II. 국제결혼 양상과 결혼이주여성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 I.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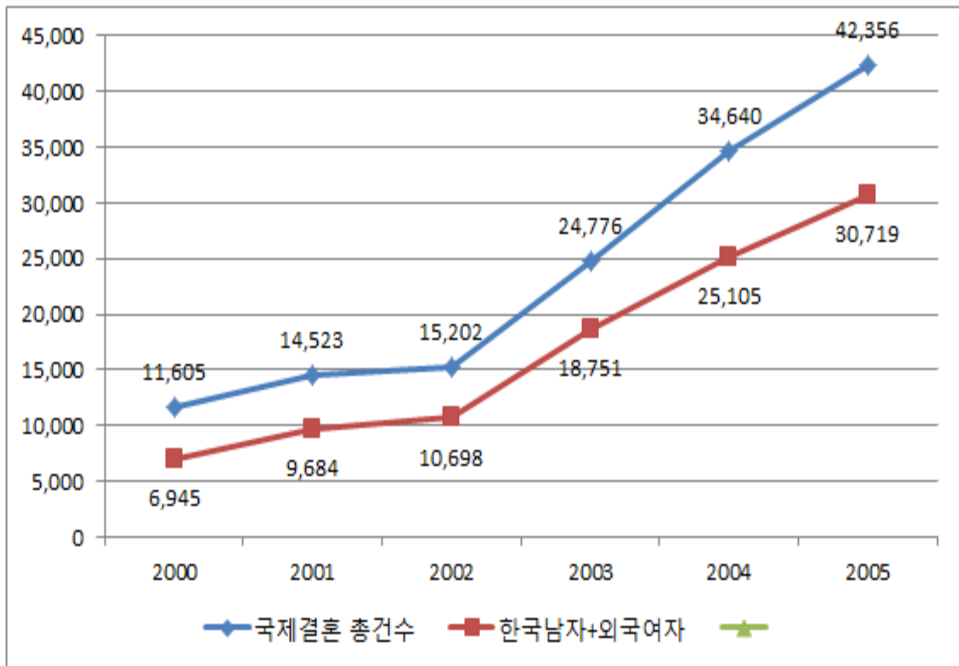
한 사람으로서 가정을 이루었다가 가정을 떠나는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고국을 떠난 이국에서 가정을 이루었다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가정을 떠나게 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은 더더욱 힘겨운 일이다.

이혼, 사별 등의 여러 이유로 탈가정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 설립된 결혼이주여성 자립쉼터가 “유니게의 집”이다. 2013년 3월에 개소하여 한국에서 자녀들과 경제적인 자립과 정서적인 자립을 통하여서 당당하게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유니게의 집을 개소하여 운영하는 가운데 이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떠한 부분을 만족하고 어떠한 부분이 미흡한지 보다 명확히 밝히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르게 되었다. 따라서 금번 포럼에서는 쉼터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들과의 면접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기획된 것이다. 오늘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 그리고 참여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도출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II. 국제결혼 양상과 결혼이주여성<sup>1)</sup>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결혼이주여성 증가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났다. 2000년 결혼이주여성 수는 약 7천 명을 헤아렸는데, 불과 5년 뒤에 3만 여 명으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그림 1> 국제결혼 추이(2000-2005년)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를 토대로 재구성.

결혼이주여성 증가는 국제결혼에 기초한 ‘다문화가족’ 담론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한국사회 다문화가족 담론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근현대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제결혼에

1) 정재훈(20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서 인용

토대를 두고 형성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토대가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1) 국제결혼의 의미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이해에서 중요한 작업이다.

국제결혼은 우선 국적이 다른 사람 간 혼인관계 성립으로 볼 수 있다. 인종이 같더라도 국적이 다르면 국제결혼이 된다. 본래 한국인이지만 일본국적을 가진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이다. 둘째, 주로 피부색으로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인종 간 혼인관계 성립이다. 첫 번째 유형의 국제결혼이 법적 요소를 중시한다면 이러한 의미의 국제결혼은 인종 관련 사회적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국적을 가진 본래 한국 남성과,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백인여성 간 결혼을 예로서 생각할 수 있다. 셋째, 단순한 지리적 이동 차원의 국제결혼이다. 배우자 중 한 명이 국경을 넘어 결혼하는 형태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남성이 중국 거주 한국국적 여성에게 가서 결혼하고 자리를 잡는 경우이다. 넷째, 인종이나 국적이 다르고 거주국가가 다른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이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사회적 현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국제결혼은 먼저 단순한 지리적 이동 차원에서 시작하였다. 하와이나 만주에 노동이민을 떠난 조선남자에게 한반도 거주 조선여성이 ‘시집’간 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

### 2) 국제결혼 양상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회현상으로서 관찰할 수 있는 국경을 넘는 의미의 국제결혼은 조선 말기, 일제 시대 초기 이른바 사진결혼으로 등장하였다. 하와이를 중심으로 한 미국 플랜테이션 농장에 일하러 간 한국인 남성과



본국에 있는 한국인 여성을 주로 기독교 교회가 중심이 되어 신랑·신부 사진을 매개로 중매하면서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국경을 넘어선 결혼 양상은 일제 시대 말기에 이른바 ‘대륙신부’로써 맥을 이어갔다. 일본이 개척하는 만주 지역 거주 한국인 남성에게 ‘신부를 보내자는’ 운동을 조선 총독부와 관변민간단체들이 주도하면서 생긴 용어이다(서호철, 2011).

20세기 초반과 중반 국경을 넘어 조선 처녀를 보냈던 의미에서 국제결혼은 1990년대, 즉 20세기 말에 들어서 조선족 여성을 ‘장가 못가는 농촌총각’과 연결하기 위하여 받아들이는 민관협력사업의 결과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내보내던 처녀’가 ‘받아들이는 처녀’로 양상이 바뀐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결과 나타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은 ‘농촌총각’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풍년이 들어도 결혼하기 어려운 농촌총각 이야기가 1970년대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sup>2)</sup> ‘농촌총각’이 결혼을 위하여 도시로 원정가야 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정부의 높으신 분들이 뭔가 근본적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등장하였다.<sup>3)</sup>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는 어느덧 농촌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신부청탁’을 민원으로서 받아야 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sup>4)</sup>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관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농촌청년 짝지어주기’ 운동의 계기도 되었다. 1982년 어느 날 민간단체에서 마련한 ‘농촌총각·서울처녀’ 합동맞선에서 34명의 농촌총각과 15명의 서울처녀가 만났고 그 중 10여 명의 처녀 총각이 자기 짝을 찾는데 성공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sup>5)</sup> 그러나 이후에도 지속된 합동맞선 같은 행사 자체가 농촌남성 혼인 욕구 충족의 긴박성을 상징적 차원 이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결혼상담소’ 간판을 단 결혼중매업이 형성되기 시작

---

2) 경향신문 1978년 1월 26일 4면 ‘결혼의 조건’... “... 요즘 농촌총각들은 풍년이 들어도 결혼하기 어렵다...”

3) 동아일보 1980년 8월 1일 4면 ‘웃어넘길수없는 農村총각 「遠征請婚」’

4) 매일경제 1981년 7월 14일 4면 ‘新婦請託... 국회의원들에게 취직청탁을 하는 것은 혼한 일이지만 며느리감을 구해달라는...

5) 경향신문 1982년 7월 12일 11면, ‘南山서 農村총각·서울處女 합동맞선 49명 중 짝찾은 10餘雙은 싱글병글...’

하였다.<sup>6)</sup> 특별한 자격이나 절차 없이 문을 열기 시작한 결혼상담소는 결혼 이주여성 대규모 유입의 토대가 되었다.

농촌총각 결혼문제는 1985년 12대 총선에서 추곡수매가 등 경제 이슈와 더불어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sup>7)</sup> 그리고 이주여성을 통한 농촌총각 결혼문제 해결이 12대 총선 과정에서 공론화되었다.<sup>8)</sup> 이색적 주장으로만 여겼던 ‘처녀 수입’은 일본 농촌총각의 필리핀 ‘원정 짝찾기’가 알려지고<sup>9)</sup> 결혼을 못해 비관 자살하는 농촌총각이 생겨나면서<sup>10)</sup> 우리사회에서도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80년대에 지속된 도시처녀와 농촌총각을 집단 소개하는 짝짓기 행사의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해지면서<sup>11)</sup> 중국동포 여성을 농촌총각과 연결하는 움직임이 1990년대에 부상하였다. 이는 1986년 중국의 아시안 게임 참가를 계기로 ‘중공’이 아니라 중국의 실체를 우리나라 정부가 인정하고 중국 거주 한국동포를 대상으로 이산가족 만남 등 국교 정상화 노력을 하는 정치적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움직임이었다. 1992년 한국이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한 역사적 사건 이후 중국동포 여성의 결혼이주는 농촌총각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농촌신랑·연변신부’로 상징되는<sup>12)</sup> 중국동포 여성의 결혼이주는 1990년대에 그 숫자가 3만 여명 이상을 헤아릴 만큼 국제결혼의 큰 흐름을 형성하였다. 농촌총각 결혼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서 1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각종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sup>13)</sup> 언론과 정치인, 관의 지원

6) 경향신문 1984년 6월 2일 11면 ‘處女 좀 구해주셔요’... “시골노총각 성화에... 복덕방에 결혼상담소 간판을 함께 달게 됐어요...”

7) 동아일보 1985년 2월 5일 1면, ‘農政·地方 總選爭點化’... “離農 현상과 관련,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있어 장가 좀 보내달라고 데모까지 하고 있다.”

8) 경향신문 1985년 2월 8일 5면 ‘金令培·新民·서울 江西 후보’, “병든 소 수입하지 말고 처녀를 수입, 농촌총각 장가보내야 한다.”

9) 동아일보 1986년 10월 9일 11면, ‘新婦감 달린 日 농촌총각들 比 원정 짝찾기.’

10) 경향신문 1988년 9월 6일 14면 ‘장가 못 간 농촌총각 農藥마셔 비관 자살.’

11) 한겨레신문 1990년 2월 17일 9면, ‘하루 때우기식 ‘짝맺기’ 행사 농촌총각들 가슴앓이만 더해.’

12) KBS 2 TV ‘11시에 만납시다’ 1991년 1월 22일 「농촌신랑, 연변신부 - 이용섭, 정성실 부부」

13) 한겨레신문 1991년 3월 21일 8면, ‘기초의회 여성후보 곳곳서 ‘분전’... 농촌에서 출마

을 받는 민간단체 등이 나서서 한 중국동포 여성의 결혼이주 추진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국가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중국동포 여성의 결혼이주 절차를 간소화하였고<sup>14)15)</sup> 정치권에서 농촌총각·중국동포 여성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였다.<sup>16)</sup> 심지어 맞선비용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공영방송이 나서서 ‘영상맞선’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였다.<sup>17)</sup>

1980년대 말 냉전시대의 종말로 인한 공산국가과 국교수립은 중국동포 뿐 아니라 구소련(러시아)령 사할린 거주 한인여성의 결혼이주로도 이어졌다.<sup>18)</sup>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일제시대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할린 동포 귀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 하나의 결과였다.

교포 규모가 작은 사할린은 예외로 하더라도, 1992년을 정점으로 ‘중국동포처녀수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는 초반의 열광적 반응을 떠나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결혼보다 한국 거주 자체를 목표로 입국하여 국적 취득 후 가출, 별거,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를 해체하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1993년 말부터 ‘中國 교포처녀에 속은 「百年假約(백년가약)」農村총각 「무효訴」 잇달아,<sup>19)</sup> ‘달아난 신부들 - 농촌총각 울리는 위장결혼,<sup>20)</sup> ‘中國교포 위장결혼 전면 조사’<sup>21)</sup> 등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또한 중국동포여성 결혼이주가 농촌총각 결혼문제 해결과 관계없다는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결혼이주자로서 중국동포 여성에 대한

---

한 여성후보들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14) 경향신문 1991년 2월 4일 9면, ‘農村총각들 짝짓기 延邊行... 家福研 주선 내달 교포처녀 맞선 혼인 절차 등 정부와 협의 중...’

15) 경향신문 1992년 4월 7일 22면, ‘大法院 예규 마련 未修交 국민과 국내서 결혼 여권만으로 혼인신고 가능.’

16) 경향신문 1991년 3월 16일 12면, ‘中國 교포처녀 35명 초청 농촌총각과 「만남의 자리」... 농촌총각 장가들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朴昶秀의원(民自)이 오는 4월 중순 중국교포처녀35명을 국내로 초청...’

17) MBC TV 1992년 12월 26일 오전 10시 ‘농촌총각·연변처녀 영상맞선... 생방송 통신여성 통해 10쌍 자리...’

18) 매일경제 1992년 2월 11일 19면 ‘교포처녀와 맞선 보러 농촌총각들 사할린行.’

19) 동아일보 1993년 12월 2일 31면.

20)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1993년 11월 28일 밤 10시50분.

21) 경향신문 1993년 11월 30일 23면 ‘국적얻어 家出한 뒤 취업... 농촌총각들 큰 피해... 90년이후 千(천)여명 入國

사회적 관심사는 그 열기를 잃어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록을 중심으로 법무부에서 행한 199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로서 중국동포여성 과 결혼한 한국 남성 694명 중 약 70%에 달하는 476명은 농촌총각이 아닌 도시 일용직 근로자였다. 또한 이들 중 49명 가출을 포함해 모두 67쌍이 별거 등 혼인해제 위기를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sup>22)</sup> 조선족 처녀와 결혼한 농촌총각 4명 중 1명은 결혼에 실패한다는 1997년 경기도 사례<sup>23)</sup> 역시 농촌총각 결혼문제 해결에서 중국동포 여성 열기를 식히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결혼이주 여성 중 여전히 중국동포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 여성의 국적 다양화로 이어졌다.

조선족 처녀에 대한 열기가 조정 국면에 들어선 과정에서 우선 국제결혼 이라도 ‘같은핏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 베트남 여성 결혼이주가 농촌총각 결혼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베트남 여성은 일명 ‘라이파이한’이었다. 주로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태어난 ‘한국남성 - 베트남 여성’ 사이 자녀였다.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단절했던 국교는 러시아, 중국, 동유럽 국가 간 국교 수립 분위기에서 1992년 이루어졌다. 1992년 한-베트남 국교 재수교는 1995년 ‘라이파이한’ 여성과 우리나라 농촌총각 37쌍의 베트남 주재 한국 총영사관 합동결혼식의 밑거름이 되었다.<sup>24)</sup>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필리핀, 러시아 등 피부색과 인종이 전혀 다른 경우에도 결혼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 시도가 언론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이는 주로 일본 사례를 보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의 장가 못가는 농촌총각들이 필리핀으로 러시아로 결혼여행을 떠났다는 보도를 하는 식이었다. 미혼여성의 농촌이탈이 극심한 북부 아오모리 현 소재 여행사 협회가 러시아 여성과 일본 농촌총각 간 결혼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할린 배필여행’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였다.<sup>25)</sup>

22) 한겨레신문 1994년 1월 4일 18면, ‘중국동포와 결혼생활 실패.’

23) 한겨레신문 1997년 6월 13일, ‘농촌총각-조선족처녀 25%가 파경, 경기도 380여쌍 이혼·가출.’

24) 동아일보 1995년 3월 7일 29면 「라이파이한」 37쌍 合同결혼식.

25) 동아일보 1993년 5월 15일 6면, ‘日 농촌총각 러여성 결혼 추진... 日本의 북부 아오모

### 3) 국제결혼 양상의 특징

한국 근현대사에서 대규모 사회적 현상으로서 찾아볼 수 있는 국제결혼의 특징은 먼저 ‘같은핏줄’을 찾는 순혈주의이다. 비록 다른 나라에 갔지만 대다수 한국남성은 현지 여성과 혼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진신부, 대륙신부가 생겨났다. 1980년대부터 시작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도 그 대상이 ‘도시 처녀’를 벗어나 국경을 넘었지만 ‘같은핏줄’로서 중국동포가 되었다. 규모가 작아서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사할린 동포 여성 유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중국동포 처녀’ 유입이 사회적 기대에 못미치면서 나타난 또 다른 대안 역시 반쪽이라도 피를 이어받은 ‘라이파이한’ 여성이었다.

둘째, 순혈주의에 기초한 국제결혼이 1990년대 말부터 상대적으로 다양한 인종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전환의 계기는 우선, 중국동포 여성 결혼이주에 대한 현지에서의 반감도 있을뿐더러 무엇보다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유입된 중국동포여성 결혼이주 관련 이른바 실패 사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필리핀이나 러시아 여성을 찾아 결혼여행에 나서는 일본 사례를 접하면서 다른 인종에 대한 거부감도 감소하기 시작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셋째, ‘도시처녀가 환경이 열악하다고 외면하는’ 농촌 남성의 결혼문제 해결에서 시작한 결혼이주여성 유입이 농촌·도시 지역을 떠나 저소득층 남성 결혼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변화하였다. 농촌총각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저소득층 미혼남성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에서 계층의 문제 해결수단으로 국제결혼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중 저소득·저숙련·비전문직 종사자 비중이 높은 상황(김명현, 2014:157)은 한국 남성과 비서구권 여성 간 국제결혼을 저소득층·사회적 약자의 형성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

리靑森 지역의 여행사협회는 미혼여성들의 극심한 離村向都...'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탈가정 후에 대한 경험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반 구조화된 면접질문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총 8명의 결혼이주여성의 심층면접 자료를 영역별로 범주화(categorizing)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세한 연구질문은 부록을 참조)

구분	나이	출신국	국적	결혼	탈가정	자녀수	본인 직업
참여자 A	31	캄보디아	한국국적 취득중	2007	이혼	1	통역
참여자 B	40	중국	한국&중국	2008	이혼	2	식당 서빙
참여자 C	31	중국 (조선족)	중국	2011	이혼	없음	일용직
참여자 D	45	중국	중국		이혼 소송중	중국에 1명 있음	식당
참여자 E	30	베트남	베트남	2008	2012	1	봉제공장
참여자 F	32	베트남	베트남	2007	이혼	1	봉제공장
참여자 G	36	베트남	베트남	2012	별거중	없음	봉제공장
참여자 H	30	베트남	베트남	2010	기타	1	봉제공장

###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탈가정 후 생활을 이해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탈가정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8명을 심

층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탈가정 사유 및 이혼 과정’, ‘탈가정 후 어려운 점’, ‘탈가정 후 자립을 준비하는 어려움’, ‘유니계의 집 장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으로 부터의 지원이나 서비스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등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	본질적 주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탈가정사유 및 탈가정과정
전 남편 딸 성폭행	
시어머니와의 갈등	
문화적, 언어차이로 인한 갈등	
약자이기에 참을 수 밖에 없는 남편의 폭력	
결손가정에서 자란 남편	탈가정 후 어려운 점
주거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탈가정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마음의 상처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제공자가 없어서 막막함	
양육비, 위자료 등의 미지급 등 경제적 어려움	
국적취득 어려움	
건강보험 자격상실로 인한 의료이용 어려움	
법적 해결에 따른 어려움	탈가정 후 자립을 준비하는데 어려움
타국에서 무엇이든지 의지할 곳 없이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막막함	
경제적 어려움	
혼자 집구하기	
근무시간 동안 자녀 맡길 곳 부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으로 부터의 지원이나 서비스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으면 함	
한국 법적처리에 대해 안내해 주거나 알려주는 곳이 있었으면 함	
의료적 혜택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함	유니게의 집 장점
쾌적한 공간제공 및 개별성 존중	
일하는데 제약 없음	



## 1. 탈가정 사유 및 탈가정 과정

연구참여자들의 탈가정 사유 및 그 과정에 대해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남편의 무능력으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 경제적인 무능력과 습관성 알콜섭취, 게임중독 등이 있었고, 문화적·언어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 시어머니, 시누이들의 결혼생활과 자녀양육에 대한 필요이상의 간섭 등 시댁과의 갈등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정과 연구참여자에게 대한 무시와 약자이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남편의 폭력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 1)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1년 동안 일했고, 그 다음에 1년간은 일을 안했어요, 그 다음에 2년을 일하다가 2년 동안 일을 안하는거예요, 그러면 지금 6년 동안 3년 동안 일을 안 하는거예요, 제일 마지막 2년 동안 일 안 하는게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도 크면서 유치원도 다니게 되고, 가정에서도 남편이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하니까 돈, 수입 들어오는 것도 없고, 물론 돈 모으는 돈들을 자기가 관리 하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고 일을 안하니까 더 생활하는것도 더 없고, 그래서 제가 밖으로 일을 하러 가는데 또 이것을 발목을 잡고... (참여자 A)

제가 남편한테 일 나가라고, 얘기 했어요, 저는 보통 3년 동안 얘기 안했어요, 남편한테, 일 나가라고 하는 말을... 집에서 계속 게임 하거든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7시에 일어나서 게임하고, 그럼 밤 새벽 5시에 자요, 그러면 자는 시간이 두 시간, 네 시간, 밖에 안해요, 그럼 제가 일하러 나갈 때 그 시간에 자요, 일어나면은 제가 일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시어머니 밥 해주고, 제가 밥을 못해주잖아요, 그럼 그때 싸우게 되는거지, 네가 아내인데 왜 남편한테 밥을 안해주냐, 일 나가니까, 그 상황에서 너무 당황한거지, 자기 생각에는 아내가 있는데, 왜 자기 엄마가

해주는거냐, 만약에 제가 돈을 가정에 다 쓰면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다 안쓰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미운거죠, 마지막 날에는 조금 다름이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데리고 방에 가서 목을 졸랐어요. (참여자 A)

## 2) 시댁과의 갈등

시어머니 문제도 있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많았어요, 제가 반찬 뭐 만들어도 안 드시고, 드신다고 하면은 안 드시고, 만들어주면은 먼저 먹고, 우리가 치워버리면 나중에는 어머니가 우리는 맛있는거 자기끼리만 먹고 본인한테 안 챙겨주고, 언어도 안 통하고, 말도 안 듣고, 아무튼 시어머니가 저를 좀 안 좋아하는거지, 돈도 안 버니까 돈 안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돈 벌어서 많이 주면은 문제가 없을거 같아요. (참여자 A)

중국에서 소개로 현재 남편을 만났고, 서울에 집이 있다고 하였고,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서울에서 시동생과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과 시동생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주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시누들이 개입을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누이들이 동참해서 나를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 때문인지 임신 3개월차에 유산이 됐고.....시누이들이 늦은 밤에 수시로 찾아와서 욕하고 괴롭혔다, 정확하게 내가 뭘 잘 못했는지 알지 못해 답답했어요 (참여자B)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네가 여기 있어도 필요없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집으로...캄보디아로 보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시어머니하고, 남편도 싸우거나 문제 있으면 항상 니네 나라로 가라, 니네 집에 가라, 여기 있지 마라, 캄보디아로 가라,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 A)

### 3) 문화적, 언어 차이로 인한 갈등

저 말이 안 통하잖아요, 좀 힘들어요, 저는 많은 말이 너무 힘들어, 한국말, 너무 많이 잘 몰랐는데, 그거 신랑 이해 못했어요, …(중략)… 남편 이혼 안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이혼하고 싶다고, 그냥 저 생각하면은 결혼 안 맞아 하나까요, 둘이 같이 살면 둘이 더 힘들어요, (참여자 H)

(같이 살 때도) 말도 안통하고, 말 없어요, (참여자 B)

그냥 지금도 소송 많이 해서 같이 성격이 안 맞아요, 같이 살기 힘들어서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중략)… 왜냐면 두 번 결혼 했어요, 내가 전에도 말 했어, 나 두 번 결혼했어요, 다시 이혼하는거 생각 없어,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데도 못해요, (참여자 D)

### 4) 약자이기에 참을 수밖에 없는 남편의 폭력

저한테 때려서 저도 참을 수 있어요, 부부 같이 살아도,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싸워도 괜찮아, 한 번 두 번 세게 때렸어요, 그래서 작은 딸 위해서 참았어요, 너무 어려서, 한 살 이 정도? 큰 딸한테 이렇게 한 거 제가 잘 몰라서 참았어요, 나중에 큰 딸한테 이렇게 한 거 제가 알아서 참을수 없어요, 그냥 나왔어요, …(중략)… 술 많이 마셔, 돈 벌어서도 필요 없는 것도 써, 노래방 한 번에 40만원, 50만원 써, 항상 나가서 먹어, 집에서 안 먹어, 제가 만든 것도 맛 없어, 이런거 그래서 제가 더 힘들어서, 그냥 이해해요, 이렇게 하면, 큰 딸한테 이렇게 하면 참을 수 없어요, 지금 생각해도 싫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참여자 B)

한국에서 8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국적 안 따줘, 왜냐면 술도 먹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안해 주고, 아직도 국적 못따서… (중략)… 저 남편이 때렸어요, 때리고 폭행 때문에, 저는 아이 키울 수 있는데, 하지만 집도 없고, 그동안 여기서 사니까, (참여자 F)

## 5) 결손가정에서 자란 남편

(남편이) 어렸을 때 부터 고아였어요,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또 다시 시집가니까, 애들은 둘인데, 외할머니한테 맡겨서 어렸을 때 부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 아빠도 돌아가서 생각하는데... (남편도 결손가정에서 자람) ... (중략) ... 아이를 좋아하는데 아빠 자격 없어요, 뭐 어렸을 때요 엄마한테 그렇게 못 받았잖아요, 친엄마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결손가족으로 자라 아빠로서의 양육방식을 모를것이라는 판단) (참여자 E)

## 6) 전 남편 딸 성폭행

남편 나이 많아, 15살 차이나요, 그래서 남편 가족도 있어요, 남편 딸도 제가 5살 여 6살 차이, 남편 큰 딸, 그리고 처음에 괜찮아, 제가 큰 딸 데리고 와서 그 후에 점점 안 좋았어요, 큰 딸한테 성폭력 했어요, 그래서 둘이 데리고 나가서 지금까지 3년, 4년 동안 쉼터에서 살았어요, 큰 딸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저 불러서 알려줬어요. (참여자 B)

## 7) 가난한 친정으로 인해 무시 당함

시댁식구들과 친척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너는 오지마, 너는 집 잘 지키고 있어, 하면서 제주도에 갔는데 나는 너무 가고 싶었는데, 집을 지키라고 해서,,,,, 시댁식구들이 제주도 여행을 간 다음에 혼자 많이 울었어 이것은 나를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다. (참여자 F)

지금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받는 월급으로 아이 유치원비, 교육보험료, 학원비 아이 교육자료, 옷도 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기가 버는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가난한 우리나라에 보내고 있다고 의심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남편은 때리기 까지 했어요. (참여자 F)

## 2. 탈가정 후 어려운 점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탈가정 후 가장 첫 번째로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문제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더욱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자녀의 양육 및 교육문제의 어려움, 탈가정의 과정을 경험하며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 한국생활에 있어 정보제공자의 부재, 양육비·위자료 미지급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1) 주거문제

첫 번째 제일 어려운 게 집이죠, (참여자 A)

이혼하고 나서 먼저 방 얻어야 돼요, (참여자 B)

이혼하고 나서 제일 어려운거는 있을곳 이죠, 왜냐하면 금방 나와가지고 있을곳이 없으니까 그게 좀 막막하고...(중략)... 일단은 가장 있을 곳이 문제인거죠, 있을 곳이, 난 막 나왔는데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잖아요, 있을 곳이 없고 하면은 (참여자 C)

이혼하면 그냥 제일 큰 걱정은 집이에요, (참여자 D)

### 2) 자녀의 양육 및 교육문제 (학교 교육, 한국어 교육 등)

제일 어려운게 교육쪽인 것 같아요, 교육문제, 대부분 학교를 다니는데, 조사, 서류, 가정통신, 그런거 오는게 학교에서 참석해라, 저도 일해야 되니까, 그게 참석도 못하고, 학부모라 같이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 있어서 또 만나기가 부담이 되고, 나는 외국인이고, 거기 가서 뭐라고 할까, 조금 자연스럽게 못하는게 있어요,,,아무튼 아이 학교 다니는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참여자 A)

아이가 지금 1학년이니까 숙제가 많지 않아요, 그거는 많이 안 어려운데, 준비물 그런것도 보통, 준비물은 적어주잖아요, 가정통신문에, 그거 가지고 문방구에 갔다가 맡겨요, 그러면 그대로 갖다 주고, 제일 어려운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럴까,,,제가 좀 모르는게 있어요, 아이한테 출판사 어디냐, 책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 어려운게 있어요, 아이 학교 정보가 제일 어려워요, (학교 학부모 모임) 한 번 갔는데 많이 불편했어요, 물론 저도 불편하고, 그 사람도 불편하겠죠, 한 번 갔다가 다음부터는 참석 하기는 싫다, 그런 생각이,,, 제가 가끔씩 누구 눈치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외국인이고, 말하는 것도,,,그 사람도 저를 다른 사람 하고 비교하면 말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못하고, 서로 그런 것도 있어요, (참여자 A)

한국말도 어려워서 작은 딸한테 가르쳐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도 어떻게 가르쳐줘, 이런 사람 필요해요, 작은 딸한테 한국어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참여자 B)

아이 학교 가면 모르는거 있잖아,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그거 대답 할 수 없으면 그게 제일 걱정해요, ...(중략)... 알림장 그런거는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중학교 그 때, 아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오르면 저는 진짜,,,그리고 혹시 왕따 될까봐, 그게 걱정,, (참여자 E)

애기 혼자 키우는,,,혼자 키우는거 할 수 있어요, 말을 너무 모르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너무 힘든데, ...(중략)... 항상 걱정이죠, 조금 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기 생각해서 여기 나가서 직장 다녀서, 시간 있으면 한국말도 배우는데, 국적도 천천히 만들어도 괜찮은데, 앞으로 어떻게 키우는지 애기 커서는 항상 걱정이니까, ...(중략)... 조금 커서는 말 안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가 한국말도 잘 모르고, 다 대답할 수 있잖아요, 말도 안들을 것 같아, (참여자 H)

### 3) 탈가정의 과정에서 심리적 · 정서적 어려움, 마음의 상처

상담 못 받았어요, 저도 상담 받고 싶은데, ...(중략)... 저는 심리적으로 받고 싶어요, 그거 알아 보고 하는게 힘들더라구, 제 생각에는 심리적인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건지 아니면, 물론 들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못 있는거잖아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송하는 탈가정은 서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는 말대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심리적으로는 많이 생각이 들죠,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많이 상담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항상 생각 가끔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와서 사는거지, (참여자 A)

### 4)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제공자가 없어서 막막함

우리 밖에 나와서 아는 분도 없고 이럴 때 황당한 거죠, 정보를 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와가지고...이혼을 할 때가 그 때가 제일 힘들었던거죠,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거죠, (참여자 C)

### 5) 양육비, 위자료 등의 미지급 등 경제적 어려움

처음에는 한 달 후에 그때는 줬었어요, 줬다가 안 줬다가 그냥 보니까,, 주는게 좀 아까운 느낌? 그런게 좀 있어요, 위자료 못 받았어요, 제가 포기하고, 대신 친권하고 양육권은 제가 받고, 저는 30만원을 매달 주면 또 괜찮은데 매달은 안줘요, (참여자 A)

(양육비) 안줘요, 딱 두 번만 주고, 다음에 계속 준다고 하는데, 그냥 주지 않고, 주지 않아서 제가 법대로 따라 했는데, 그런데 만나면 돈 안줘도 돼요, 만났는데 욕하는거예요, 저 괴롭히고, (참여자 E)

## 6) 국적취득의 어려움

제가 그때 여권이 집에 있는데, 남편이 아마 숨기거나 갔다가 버렸어요, 여권이 없어서 비자 연장하는 것도 안돼요, 그래서 한 번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가는데 이 서류는 안된다, 저 서류는 안된다, 그러면 저는 너무 겁나는거예요, 안된다는 소리가, 연장도 못하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참여자 A)

지금, 혼자 사는데, 국적 때문에, 왜냐면 저는 지금 한국 와서 8년 넘었는데, 남편 안 해줘서, 지금 혼자서 서류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따고, 이렇게 알아서...원래는 한국 와서 남편 2년, 3년? 그렇게는 딸 수 있게 해준다고, 근데 8년 넘었는데 안 해줘, (참여자 F)

## 7) 건강보험 자격상실로 인한 의료이용 어려움

병원 다닌거, 제가 집에 있을 때 건강보험이 있잖아요, 집에 나가서 남편이 다 없어졌어요, 돈 안내고, 제가 의료보험증 쓸 수 없어요, 지금, 국민 의료보험, 병원 다닐 때도 이거 쓰는거 제가 지금 못 써요, 남편이 돈 안 내서, 만약에 제가 다시 사용하면 제가 먼저 2년 동안 돈 내야돼, 돈 내서 제가 쓸 수 있어요, (2년 간 의료보험 연체 되어 현재 의료보험 사용할 수 없음) (참여자 B)

## 8) 법적 해결에 따른 어려움

지금 큰 딸 파양했어요, 재판 다 끝났어요, 제가 우리 진짜 어떻게 말하지, 억울해요! 무죄로 했어요, 1심, 2심, 3심, 상소도 했어요, 그래도 무죄 했어요, 무죄로, 위자료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참여자 B)



### 3. 탈가정 후 자립을 준비하는데 어려움

탈가정 후 자립을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한국에 대한 정보도 모르는데 타국에서 무엇이든지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막막함이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한다.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집을 구해야 하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려고 해도 근무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곳도 찾기 쉽지 않는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1) 타국에서 무엇이든지 의지할 곳 없이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막막함

한마디로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가족한테 도움 받는것도 없고, 저 혼자 스스로 여기를 나가야 되고, 아이를 혼자 키워야 되고, 아이를 봐야 되고 학교 알아 봐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한국어도 잘 모르고, 정보도 잘 모르고,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에게 물어 보는게 많이 좀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참여자 A)

#### 2) 경제적 어려움

왜냐면, 내가 탈가정소송중이에요, 국적 따려면 돈도 필요해요, 재산, 여기 한국은 나와서 돈 거의 안 벌었어요, 사는곳을 여기서 혼자 사는 집이 있어야 되요, 제일 큰 거는 돈 때문이에요, 왜냐면 여기 나와서 돈 잘 못벌어서 그래요, 진짜 힘들어요.

(참여자 D)

경제적인게 제일 어렵죠.

(참여자 C)

#### 3) 혼자 집구하기

어려운게 부동산에 집을 찾는게, 부동산을 가야되잖아요, 찾으니까, 이게 가면 맞나?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딱 해보니까 이게 많이 안 어렵네? 부동산만 이야기하면 집을 찾아주니까, 제가 전화해서 집을 보러오라고, 원룸 보통 큰 집은 비싸니까 못가고 그런데 원룸은 안에 생활하는거는

다 있으니까, 그런데 집은 좀 좁기는 해요, 하지만 일단 들어가고 주소 옮기고 계약하고, 계약하는게 조금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내가 맞는건지, 해도 되는건지, 좀 어려워요. (참여자 A)

#### 4) 근무시간 동안 자녀 맡길 곳 부재

이것도 걱정해, 돈도 많이 들어가, 그래서 돈 벌어야되기 때문에 작은 딸 봐줄수 없어요, 나중에 학교 다니면 3시, 4시 끝나서,.. 제가 또 일 그만 두면 안돼요. (참여자 B)

###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으로부터의 지원이나 서비스가 개선 되었으면 하는 점

연구참여자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절차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한국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안내해 주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 1)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으면 함

뭐야 법이, 외국인 무시한거냐, 자기들끼리 말해서 통해서 되는건데 나는 왜 안되냐, 한 번은 연장해 줬어요, 다음에 여권 꼭 가져오라고, 그래서 저는 돈 없는데도 집에 가야되요, 캄보디아는 한국 여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가야되요, 그럼 그때 어쩔수 없이 아이를 남편한테 맡겼어요, 한 번은, 그래서 여권을 만들어서 연장 해줬어요, 비자 바뀌야 되잖아요, 양육권 친권 받고 있는 사람들은 F2에서 F6인가? 그거 바꾸니까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거는 2년에 한 번 연장이 되니까, 제가 그거 외국인은 한국 사람처럼 모든지 하면 조건이 조금 까다롭잖아요, 한국사람 보다는, 그래서 제가 꼭 국적은 받아야된다고, 돈이 3천만원이 있어야 된대요.

(참여자 A)

## 2) 한국 법적 처리에 대해 안내해 주거나 알려주는 곳이 있었으면 함

여기 피해자 생활하잖아요, 법원에서 아는 분들 계시면 더 좋아요, 한국 법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제가 법원에서 무슨 일 생겨서 물어보고 싶어,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있으면 좋아요, (참여자 B)

병원 이런거 다 도와주잖아요, 우리는 외국, 진짜 한국에서 좋아, 모르는거 다 도와줘, 은행 이런거는 다 도와줘, 이거 모르겠어, 하는데 그때는 한국에 사는거, 사람들이 살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만약에 국적 이런거 많이 어려운데, 그랬으면 좋겠어, 국적 따는거, 사람들이 한국 와서 8년 넘었는데, 한국 사람 되고 싶다고, 그 때는 안되겠다고, 돈 없어서도 안되고, 인터뷰도 그렇고, 이런거는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참여자 F)

탈가정 소송,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계속 조사, 계속 조사, 우리 왜냐면 기다리는 동안 상처 계속 있어서, 이렇게 하면, 소송 같이 하면 살 수 없어요, 빨리 빨리 끝나면 더 좋아요, (참여자 D)

## 3) 의료적인 혜택 지원 받을 수 있었으면 함

국가에서 좀 더 도와주면 좋아요, 네, 지금 저 작은 딸하고 의료보험 없어서 제가 몸이 아파서 그냥 약 사서 먹어, 병원 다니고 싶어, 지금 작은 딸도 예 방주사 지금도 안 했어요, 의료보험... (참여자 B)

## 5. 유니게의 집 장점

본 연구 참여자들은 유니게의 집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 이유는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점과 개별성을 존중하는 시설의 운영방침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탈가정 이후 자립해야 함에 있어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 1) 쾌적한 공간제공 및 개별성 존중

좋은점은 공간이 있고, ... (참여자 A)

다른데보다 여기 더 조용해, 깨끗해, 그래서 혼자 가족, 방 쓰는거, 지금 가족처럼 이렇게 쓰는게 좋았어요, 여기 와서 진짜 편했어요, 마음도 편했어요, 뭐 필요하면 소장님이 다 도와줘요, 제가 재판 있어서 통역 선생님 필요해, 그래서 찾아줬어요, (참여자 B)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진짜 다른데 보다 진짜 좋아서, 소장님도 많이 도와줘, 지금은 만족해요, (참여자 B)

여기는 좀 각자 생활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전 쉼터) 여럿이서 같이 생활해야 되는구요, 여기는 방이 따로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참여자 C)

지금 거의 여기서 편히 살아서 좋아요, ...(중략)... 왜냐면 여기 나가면 아무도 없어, 우리 집에서 나가서 아무도 없어, 여기서 거의 물건 거의 다 있어, 진짜 편해요, (참여자 D)

음...좋아요, 공간이 좋고, 깨끗하잖아요, 저는 쉼터 그 전에 살 때 더 좁죠, 그 때 방이 6가족이 같이 사는거예요, 어떤 방은 7가정, 9가정 이렇게 다 같이 생활하고, 너무 불편하고, 복잡하고, 여기는 좋아요, (참여자 E)

여기? 좋은점? 다 좋은데, 왜냐면 우리는 집 나오면 아무데도 없어, 돈도 없고, 다, 집 이런거 옷 몇 개만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센터에서 다 도와줘서, 그래서 다 좋아, (참여자 F)

## 2) 일을 하는데 제약이 없음

연구참여자들은 유니게의 집에 거주하는 동안 이들 스스로 구직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니게의 집에서 거주하는 일정 기간 동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 좋은점은, 제가 여기서 일할 수 있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같이 지낼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있을수 있어서 좋고, 그동안에 돈을 모을수 있잖아요, 만약에 다른데 가면 돈을 모을수 없어요, 일하기도 어렵고, 여기서 아무튼 마음은 많이 편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있을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고, (참여자 A)

여기 집이요? 여기 집 너무 괜찮아요, 좋아요, ...(중략)... (다른 쉼터에서 이쪽으로 옮긴 이유) 제가 애기 키우잖아요, 저쪽에 직장 못 다녀서, 여기서 이사했잖아요, (참여자 H)

## 3) 기타

유니게의 집에서는 내가 한국에서 체류 연장을 해야 될 때 그런 상담과 잘 모르는 서류들을 챙겨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상담이 있거나, 아이가 아플 때에 도와주시고 있어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이런거 신청할 때 소장님이 같이 가셔서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봉제공장에서 취업을 하면 외국인이라는 차별 때문에 소장님이 미리 사장님과 만나서 도와주고 있어요, (참여자 H)

## IV. 결 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탈가정 후 생활실태에 따른 대안모색을 위해 설계되어 인터뷰를 실시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가정 사유 및 탈가정 과정을 살펴본 결과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전 남편 딸 성폭행, 시대과의 갈등, 문화적 언어 차이로 인한 갈등, 약자이기에 참을 수 밖에 없는 남편의 폭력, 결손가정에서 자란 남편 등의 요인들이 있었다. 따라서 탈가정의 사유 및 과정을 보면 결혼이민자로 인한 이유보다는 남편의 요인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으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대상자를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지 말고 배우자나 시댁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는 하나 결혼이주여성이 장기적으로 정착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비롯한 시댁가족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교육, 배우자 국가의 문화이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탈가정 후 어려운 점을 살펴 본 결과 주거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탈가정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마음의 상처,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제공자가 없어서 막막함, 양육비, 위자료 등의 미지급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탈가정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쉼터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서비스 안내, 심리·정서상담 등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청이나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다양한 행정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탈가정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타국에서 무엇이든지 의지할 곳 없이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막막함, 경제적 어려움, 혼자 집구하기, 근무시간 동안 자녀 맡길 곳 부재 등으로 나

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멘토링이나 서포터즈와 연결이 되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육시설과 경제적 지원체계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한시적 경제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이나 서비스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으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으면 함, 한국 법적 처리에 대한 안내 및 알려주는 곳이 있었으면 함, 의료적인 혜택지원 받을 수 있었으면 함 등이었다. 차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다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기관이나 다문화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탈가정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의료적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관내 병의원과 MOU를 체결하여 이 문제를 곧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넷째, 유니게의 집 장점으로는 쾌적한 공간제공 및 개별성 존중, 일하는데 제약이 없음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니게의 집의 환경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운영에 있어서 거주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운영상의 장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니게의 집은 이러한 장점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금일의 포럼과 같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자 선정의 접근성 때문에 베트남과 중국 등의 결혼이주여성에 국한되어 다양한 국적의 탈가정 결혼이민자의 경험을 살펴봤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보다 다양한 국적을 지닌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를 보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서호철(2011), “국제결혼 중개장치의 형성 - 몇 가지 역사적 계기들”,  
사회와 역사 91, 2011.9, 99-131쪽.

정재훈(20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역사적 평가”,  
한국다문화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포럼  
자료집, 2015.11, 18-22쪽.



# 탈가정 후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질적연구 수행과정

임원선(신한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성종숙(유니게의 집 소장)  
문정희(서울여대 대학원)

본 연구자는 아동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약 8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다. 현장에서는 주로 시설아동들과 관련된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평소 다문화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보 또는 이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어 어떠한 편견이나 선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이들의 내면 이야기에 귀기울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5년 9월 11일 ~ 10월 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면접조사를 진행함에 앞서 연구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익명성의 보장과 더불어 연구질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며 답변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면접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출신국은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으로 총 8명이었으며, 자녀의 유무 또는 국적취득 여부 등에 따라 이들이 느끼는 한국에서의 어려움은 차이가 있었다. 또한 면접을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와 심층면담의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발되었던 것은 장점으로 볼 수 있으나, 이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공감 정도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일정 부분 제약이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듣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한국어 단어는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상호간에 답답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심층면접을 진행할 때 통역사와 함께 면담을 했다면 좀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탈가정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상처와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 또한 약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참아내야 했던 감정들을 다시금 마주하게 되면서 심층면접 내내 자신의 힘든 감정들을 쏟아내느라 면담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한국에서 이혼 진행이 끝난 시점이었음에도 여전히 심리적인 상처와 불안 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는 이들의 심리·정서적인 접근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한국사회에 좀 더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와의 친밀감(rapport)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와 같이 민감한 주제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내면을 오픈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느낀 어려움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탈가정의 경험을 통해 느꼈던 어려움들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였다. 하지만 결혼이란 부부중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며, 또한 서로의 문화가 다른 국제결혼의 경우는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연구는 탈가정을 경험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였지만 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편중된 문화적 차이나 또는 주관적인 인식, 개인적인 편견에 대한 차이를 배제할 수 없다.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탈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남편, 또는 시어머니, 자녀들의 입장에서 겪는 문화적 차이, 갈등의 원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실천현장에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토론1

탈가정 후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실태와 대안 모색

주정 교수(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탈가정 후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실태와 대안 모색

토론자 : 주정 교수(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1. 왜 심타가 필요한가?

2015년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수는 2013년 약75만4000명, 2014년 약79만 5000명, 2015년 1월 기준 약81만7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 대로라면 2020년에는 총 100만명에 달하는 다문화가족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적 갈등과 언어적 문제로 인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와 이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입국초기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각종 법적문제를 겪는데, 크게는 이혼 후 국내체류, 영주권과 국적 취득문제, 체류기간연장불허, 강제퇴거 뿐만 아니라 이혼, 혼인무효/취소 문제, 다문화가정의 자녀문제 등이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귀화자격 내지 영주자격 취득심사는 매우 엄격해 많은 수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고,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 결혼이주여성은 물론 자녀들까지 무국적자로 방치되고 있다.

얼마 전 '다문화가족의 인권현황과 새로운 법적 현황-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포럼에서 국적이나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후에도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결혼이주여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제도적으로는 귀화자격 또는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

급한 바 있다.

이처럼 인생 배필과 꿈을 찾아 한국에 건너온 결혼이주여성들은 답답한 나머지 여성긴급전화를 통해 폭력과 이혼문제를 상담해 보지만 문제는 수월하게 해결되지 않고, 타지에서 맨몸으로 버려진 여성들을 보호해줄 시설마저 턱없이 부족하다. 거기다가 성매매의 덫에 걸리는 결혼이주여성들도 최근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갈 곳 없고 기댈 곳 없는 이들을 위한 쉼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쉼터의 필요성은 탈가정 후 거리를 배회하는 여성청소년들에게도 한 가닥의 빛이 되고 있다. 여기서 탈가정 여성청소년을 언급하는 이유는 약자의 입장에서 공통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탈가정 후, 자립을 위해 도전하는 여성청소년 자립팜이 있다. 탈가정 여성청소년들은 여기에 입소하여 새로운 문화와 마주치면서, 자립을 위한 도전을 시작한다.

한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초기활동으로는 주로 경기남부권(부천, 안산, 서울 외곽 등)의 거리를 배회하는 거리청소년들을 만나 거리상담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벽 2시 종료될 때까지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집을 물론이고 쉼터에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들만의 상황을 감안하여, 집을 한 채 후원받으면서 2013년에 문을 열었다. 여성청소년 네다섯 명에서 시작한 자립팜은 활동가들이 상주하지 않는다. 활동가들은 일주일 중 3일만 와서 자고, 나머지 4일은 청소년들끼리 생활하며 최대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 한다. 지금까지 열다섯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거주했다.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소위 '입국상담'을 받는데, 입국신청서에 얼마 동안 살아보고 싶은지, 살면서 뭘 해보고 싶은지, 출국할 때는 뭘



얻고 나가고 싶은지를 적는다. 이것을 활동가들과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 이것이 즉 입국심사인 셈이다. 한 달 정도 산 뒤에는 영주권 심사를 한다. 자체 제작한 여권에 영주권 도장이 찍힌다. 두 달 정도 더 살아본 후, 이곳에서 살겠다고 결정하면 시민권을 받게 된다. 그때부터 생활비 카드를 관리하거나 그들만의 회의에서 약속을 정하는 등 권리와 책임이 주어진다.

입국해서 3개월 동안은 교통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다. 3개월이 지나고 시민이 되는 시점부터는 10만원의 생활비를 내야 한다. 이 돈을 모아 친구들이 직접 장도 보고 공과금도 내며 생활한다.

출국할 때는 출국신청서를 쓴다. 이곳에서 살면서 어떤 걸 경험했는지, 출국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면 듣는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는데, 만약 준비가 덜 되었다고 판단되면 출국을 말리기도 한다.

결국 이들은 공동체에서 일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관계를 배워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립을 배우는 것이다.

자립은 단지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버는 것만 뜻하지 않는다. 관계를 맺고 이어나가는 법,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 역시 자립의 일부이다. 각자 의견을 내어서 조율하고 그것을 함께 지키면서 참여하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들이 보는 어른들은 '나를 간섭하거나 감시하는 대상이었을 뿐'이라는 공통된 말을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를 원하는 것이다.

대상자만 다를 뿐 사회에서 소외받는 탈가정후 결혼이주여성들의 방황이나 배회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결혼이주여성들 역시 남편이나 시부모를 ‘나를 간섭하거나 감시하는 대상이었을 뿐’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은 그네들이 남편과 시집식구들을 보는 시각과 사회를 보는 시선들을 감내하기 힘들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 2. 무엇이 문제인가?

- 신체적, 문화적으로 한국사회의 다수집단과 구별되는 차이로 인한 차별적 대우
- 여성이라는 점
-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남성들과 혼인하여 취약계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 국제결혼의 경로와 방식 자체가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간의 권력상 위계화를 구조화
- 결혼에 대하여 쌍방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기대도 갈등의 소지
- 배우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시댁 및 친족과의 관계 형성에도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은 불안정성을 가중
- 결혼으로 인한 빚, 송금 문제 등은 빈번한 갈등요소
- 국적취득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신분상의 불안정은 한국남편이 배우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다분
- 집단 내 이질성 때문에 집단의식의 형성이 어렵다는 점
-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양육비용, 보육 담당자, 남편과의 자녀양육태도 불일치로 인한 자녀양육문제
- 한국인 부모를 둔 또래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고 외모 차이 등으로 또래로부터 소외를 경험하여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발달에

부정적 결과

- 언어를 비롯한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부부간 대화와 합의가 어렵고 쉽게 갈등이 누적되거나 잦은 감정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음
- **문화귀소 현상**: 탈가정 후 센터를 찾지 않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근황을 소문을 통해 듣게 되는 내용의 대부분이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출신국 노동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 등이다. 이는 한국생활 적응에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한국 내에서 자신의 출신국 문화를 유지해 나가려는 일종의 문화귀소 현상을 이룬다.

### 3.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막연하고도 일반적인 이미지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무력하고 의존적인 ‘불쌍한 여성들’이다. 그래서 동정적 여론이 팽배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을 단지 문제를 겪고 있는 동일한 집단으로서만 결혼이주 여성을 바라보아서는 곤란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으로서, 출신지역과 국가, 문화적 배경,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 결혼경로와 동기 등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의 경험과 문제를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라는 단일한 관점으로만 보기보다는 주체적 삶과 희망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하며 적응해가는 과정과 대처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1) 결혼이주여성들의 주체성 인정

가족 내에서 폭력, 억압, 방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쉼터란 그저 편하고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쉼터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주체성이나 욕구보다는 ‘가출’ 자체를 문제 상황으로 보고 무조건적인 ‘보호’와 ‘가정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쉼터 이용을 꺼리는 결혼이주여성들도 많다.

따라서 주체성을 인정하고 당사자의 욕구와 의지가 중심이 되는 쉼터가 지향되어야 한다. 낙인찍혀 존중받지 못했던 그녀들의 삶에 누군가 귀 기울여주고 존중받는 사람임을 그 안에서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자립의 의지가 생기는 것이다.

## 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이해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그리움, 그리고 이주문화의 적응수준 모두 낮은 주변화 유형으로 인해 원문화 유지와 이주문화에 대한 적응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통합유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킹과 모임을 통해 지지망을 구성해 준다.

더구나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거나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쌍방향적 다문화주의 사업이 미흡한 상태에서, 그들의 문화적 고유성과 특수성이 배제된 다수문화에의 통합위주로 진행되어가는 다문화가 족지원정책 속에서는 결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접근은 찾기 어렵다.

## 3) 주거가 안정되는 게 자립의 시작

탈가정을 또 다른 다문화가정의 문제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은 시선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힘든 현실. 이 속에서 탈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립은 결코 쉽지 않다. 혹자들은 탈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우리사회 내부로 편입되지 못한

채, 사회적 편견이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안에서 건강성을 유지한다면 탈가정이 있을 수 없으며, 탈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주거가 안정되고 관계형성에 조금만 안정되어도 의지와 욕구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결국 탈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활동 역시 우리의 몫이다.

#### 4) 일관성 있는 결혼이주여성 정책

1990년대 후반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된 결혼이주여성 정책은 2003년 참여정부의 등장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 소수자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대두되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가속화되었다.

2005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부당한 억압을 예방하기 위한 ‘결혼이민자지원센터’ 확대 발표와 함께 2006년에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 및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을 확정짓는다. 이 때부터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차별방지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된다.

정부의 지원이 짧은 기간 내에 폭증하자 새로운 사업주체들이 추가로 합류되면서 사업의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부처 간의 우위 경쟁과 사업의 중복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더구나 한국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해법으로 국제결혼이 후원되고, 다문화가족의 여성과 자녀의 사회통합으로 접근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관련정책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자체에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 토론2

# 탈가정 후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실태와 대안 모색

이주여성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쉼터 기능

최진영 소장(서울이주여성쉼터)





## 탈가정 후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실태와 대안 모색

(이주여성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쉼터 기능)

토론자 : 최진영 소장(서울이주여성쉼터)

### 1. 쉼터설립배경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3년 결혼이주여성의 복지를 위해 설립, 그간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본 토론자는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쉼터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한국산업사회 노동인력 부족현상은 외국인 인력 수입으로 해소하고자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 산업재해 등으로 사업장에서 내몰린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단체에서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운영, 남녀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산업재해보상 등을 지원하면서 출발되었다.

토론자는 1997년,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여성노동자 전용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2001년 여성노동자의집이 개설되었다. 이 집은 인권상담 이외에 이주여성노동자의 산후조리와 이주여성전용 사랑방의 기능을 갖고자 하였으나,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노동자 여성과 결혼한 여성을 아우르기 위해 한국이주여성센터로 전환, 이주여성과 함께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중 한 축은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쉼터였다. 당시 연수비자, 연예인비자, 동거비자, 유학비자 등으로 한국사회에 유입된 이주여성 중 부당한 처우로 오갈 곳이 없게 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부당처우 해소에

노력하면서 정부에 이주여성의 사회안전망시스템 구축을 요구, 2004년 2개소를 지원하였으나 지원근거법의 필요성을 제기되어 2006년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에 외국인보호시설을 추가, 2015년 현재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보호시설은 쉼터 25개, 그룹홈 2개, 자활지원센터 1개 등 총 28개소에 이르고 있다. .

	2004	2007	2009	2010	2013	2014	2015
쉼터	2	4	18	18	22	24	25
그룹홈	-	-	1	1	1	2	2
자활지원센터	-	-	-	1	1	1	1
<b>계</b>	<b>2</b>	<b>4</b>	<b>19</b>	<b>20</b>	<b>24</b>	<b>27</b>	<b>28</b>

(여성가족부 통계. 재구성)

## 2. 쉼터의 기능 및 한계

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 자녀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며 폭력피해자가 직접 쉼터에 입소할 수 없고 상담기관을 거쳐 쉼터로 보호의뢰가 있어야 한다. 주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다누리 종합정보전화센터(1577-1366),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의료기관 사회사업실, 경찰서 등 기관에서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

쉼터에서는 숙식제공과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 동행 등 법률지원, 본국으로의 출국지원,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자립자활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정보 등 인권피해로부터 적극적 보호와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쉼터를 통해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주

여성은 쉼터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쉼터는 이주여성들에게 유일하게 제공되고 있는 사회안전망이므로 한국사회에서 여성 3대 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은 체류자격 유무에 상관없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

#### - 쉼터이용제한

한국에서 사업 중인 자국민 남성과 결혼한 파키스탄 여성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자 억울한 마음에 남편을 만나러 자녀 둘을 데리고 무작정 단기방문자격으로 입국, 쉼터로 연계되어 입소여부를 구청 담당에게 문의하였더니 결혼이민자격이 아니어서 입소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한참 실랑이 하다가 결국 일시보호로 받기로 한 적이 있다. 그 기간 안에 여성이 거주할 시설을 물색하여 민간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연계하여 남편을 만나 양육권, 위자료 등을 받기로 하고 귀국하였다.

외국인보호시설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다보니 담당 공무원도 쉼터 보호대상을 가폭피해이주여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현장에서 이주여성을 지원할 경우 이용대상을 두고 실랑이를 벌여야 할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 - 취업활동제한

쉼터에서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자녀를 동반한 경우, 자녀양육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주양육자인 이주여성이 자녀를 돌보고 있어, 자녀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귀화하거나 자녀를 동반할 경우 시설수급자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월 70여 만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격이 상실되므로 적극적인 취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 복지관련기관 연계의 제한

이주여성은 언어소통의 원활하지 않아 의료지원, 법률지원, 복지서비스기관 방문 등 교통편 안내, 초기상담과정 등 전 과정에 상담원의 동행하여 지원해야 하며, 지원 중간중간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하거나 독촉하는 것도 상담원의 몫이다.

이혼을 결심하고 쉼터로 온 이주여성은 심리상담을 받던 중 남편에게 술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받고 귀가하였으나 귀가하자마자 동영상 한 편을 보내왔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 전신이 떨고 있는 모습이였다. 쉼터 관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락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물었더니 당사자나 그 가족이 지원을 의뢰할 수 있으며 복지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쉼터 시설장은 그 가정을 돕기 위한 개입요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하였다. 더구나 거주지역이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센터로 연락하라는 안내만 받았다.

보건소의 임신부 지원이나 산후도우미 파견 요청도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에 입소한 임신부나 산모를 위해 쉼터가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하여 만삭의 임신부가 입소할 경우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로 불리우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쉼터는 폭력피해이주여성의 신체적심리적 치료와 사회적응과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이 쉼터에서 복지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야 한다. 즉, 의료 법률적 지원시 동행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복지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정책이 요청된다.

### 3. 사회안전망 시스템 보완

발제에서 언급되었듯이 결혼이주여성은 60년대 경공업 중심의 산업시설이 대도시 중심으로 집중되어 농촌지역 어린여성들이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집을 떠나 도시로 몰려오고, 남아를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성비불균형이 초래등 사회적 요인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양상하기에 이르렀다. 행안부 통계에 의하면 2015년 7월말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18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결혼이민자는 305,446명(다누리 통계)으로 17%에 이르고 국제결혼으로 이주하는 여성의 나라만도 127개국 이상이다.

쉼터를 이용한 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쉼터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는 여성들이 많다. 진작 알았더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하는 이주여성도 더러 있다. 쉼터에서는 서로의 상처를 열어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고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기도 한다. 또한 쉼터에서 공유하는 정보를 통해 살아낼 힘을 스스로 추슬러 간다.

귀가한 이주여성들은 남편들에게 그간의 행적 등을 추궁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할 말을 찾지 못할 경우 쉼터가 시켰다고 하여 남편들은 순진한 아내를 꼬드겨 이혼을 조장하는 가정해체의 주범으로, 가출을 부추기는 곳으로 인식하여 가족 간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회피하여 종국엔 이혼으로 귀결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쉼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도 시급하고 여성들이 귀가, 자립 후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

쉼터는 피해자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안전한 보호가 우선 과제이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호기간 내에서 교육과 정보제공은 가능하나 퇴소 후 상시 접촉공간으로는 적절치 않으므로 이주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 교육, 상담 등이 가능한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 부록1,2,3

부록1...심층면담 인터뷰 문항

부록2...(사)글로벌디아코니아 소개

부록3...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부록 1 <심층면담 인터뷰 문항>

분류	문항내용
시작 질문	<p>1.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p> <p>귀하의 성함과 국적, 직업 여부, 건강상태, 결혼유지 기간, 아이 유무 등 자신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p>
도입 질문	<p>1. 남편과 결혼부터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 및 유니게의 집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입소하게 되었습니까?</p> <p>2. 이혼 후 결혼 형태(재혼-한국인 또는 본국인 등, 동거, 싱글)는 어떠하며, 자녀 양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양육비 부담자, 양육비 전달방식,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운 점 등</p>
이혼 후 삶의 어려운 점	<p>1. 이혼 후에 어려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 남편의 괴롭힘, 국적 문제, 생활고, 자녀문제, 타인의 시선, 생활비 조달 방식 등)</p> <p>2. 이혼 후 자립을 준비하는데 혹은 자립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p>
프로그램 및 시설 관련 질문	<p>1. 유니게의 집의 장점(좋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2. 유니게의 집에서 받으신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만족할 경우, 만족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p>
개선방안 관련 질문	<p>더 좋은 운영을 위하여,</p> <p>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으로부터의 지원이나 서비스가 개선 되었으면 하는 점(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p> <p>2. 유니게의 집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p>
마무리 질문	<p>덧붙이고 싶거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 \* 부록 2

# (사단법인)글로벌디아코니아

## I. 글로벌디아코니아센터는...

본 법인은 한국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인 봉사과 섬김, 나눔을 더 잘 할 수 있기 위하여 2013년 설립되었고, 2013년 5월 9일(목)에 개원을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이웃들을 위하여 민간 차원, 특별히 기독교교회 차원의 봉사과 섬김, 나눔 사업에 대하여 연구, 방안 모색, 실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조직으로는 다문화사업부, 중독사업부, 연구사업부를 두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1동 1071-2, 상림빌딩’에 소재하고 있으며, 6층 (600여평)건물은 모두 다문화사업, 중독사업, 연구사업 등 센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 II. 글로벌디아코니아센터를 설립한 이사회는...

본 법인은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사장 김삼환목사(명성교회), 서무이사 김종생목사(온양제일교회/전 한국교회봉사 사무총장)께서 임원으로 수고하고 있다. 여러 교단 목사님들과 디아코니아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로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으며, 권오성목사(NCCK 전 총무), 김경원목사(서현교회), 김동배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 김성영교수(전 성결대총장, 백석대 석좌교수), 손인용목사(덕수교회 원로), 이원희장로(C Channel 부사장), 이재창목사(수원순복음교회), 장영일교수(전 장신대총장), 정성진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한태수목사(은평성결교회), 한현수총장(숭실대학교), 김행선이사(주,로젠스틱대표이사), 이향천이사(주, 대

표이사), 이필산목사(청운교회)께서 이사로, 김종순감사(김종순 세무사 대표이사)께서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 Ⅲ. 글로벌디아코니아센터의 주요 사업은....

#### 1. 다문화사업

##### 1) 결혼이주여성 자립쉼터 “유니게의 집” 운영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립쉼터 “유니게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기독교계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나눔과 봉사의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자립을 위해 “유니게의 집”을 설립하였고, 가정폭력,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한 이주여성들과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주거와 일부 식료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상담, 취업알선, 자녀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6가정(중국 3가정, 베트남 3가정) 11명의 식구들이 오순도순 살고 있으며, 2013년3월에 개원하여 자립 및 재혼, 본국으로 귀국 등의 이유로 결혼이주여성 12가정이 유니게의 집을 거쳐나갔다. 퇴한한 이후에도 유니게의 집을 친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명절이나 여러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 친정엄마맺기 프로그램은 유니게의 집 입주자들이 한국에서 본인들을 위해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한국에 친정이 있는 것에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 2) 가나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정서함양과 사회적 지지를 위하여 “가나다문화어린이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들과 매주 토요일 학습지도, 예능교실(피아노

및 오카리나), 독서지도, 또래집단과의 놀이문화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지원하고 있다. 아빠,엄마와 함께 가는 가족여행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은 다문화부모와 자녀들의 유대관계를 향상시키고 있다. 인덕대학교, 신현고등학교 샤프란 봉사동아리,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으로 있다

### 3)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로 구성된 “필로새소리단”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들로 구성된 “필로새소리단”을 2015년 1월에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음악을 통해 아동들은 감수성을 높이고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글 습득과 정서적인 안정, 공연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있다. 2015년 4월 “제2회 유니게의 노래” 공연과 “노원구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 합창과 오카리나 연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며, 음악으로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소리사랑합창단(김미례회장)”의 지원으로 전문지휘자(최재복 지휘자)와 반주자(오수현)의 봉사로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2016년에는 북 콘서트와 다수의 교회 초청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 4)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사업

올 해 처음으로 시행한 “캄보디아 모국방문 및 도서관 지원사업”은 많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국민일보, 기독교보, 기독교 타임즈, 씨채널 방송-다큐 2부로 방송). 실무자(유니게의 집 소장)와 언론사가 동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하여 오랫동안 본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오산시 거주) 2가정 6명(남편 및 자녀 동행)을 캄보디아 친정을 방문하게 했으며, 특별히 이들 결혼이주여성들이 졸업한 초등학교 2곳에 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책장과 도서 600권을 두 학교에 각각 지원하여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 도서관을 지원한 두 학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앞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방문 프로젝트는 확대할 계획이다.

## 5) 잠재이혼위기가정 가족강화 프로그램

잠재적으로 이혼위기를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제주도여행으로 이혼 위기를 극복하는 가족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10가정(31명), 2014년 7가정(22명)이 3박 4일 동안 제주도를 관광하고, 웃음치료사 및 이혼위기를 극복한 강사를 초빙하여 가족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족의 결속력을 높이고, 다른 다문화가정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듣는 프로그램과 배우자의 마음 알기,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참석한 다문화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제주도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잠재 위기 다문화가족들에게 상담, 자녀교육, 필로새소리단 등의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6) 결혼이주여성들의 실생활교육 “살림 아카데미”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시집 온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한국의 가족관계, 기본적인 법률지식교육, 재활용분리 수거, 세탁기 이용법, 냉장고 정리법, 자녀양육과 자녀교육, 부부 성교육, 한국 음식배우기, 다도교실에서는 다도 및 예절교육, 한복 입는 법 등과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을 여행하여 전통적인 한국사회를 경험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 7) 기 타

도서벽지 다문화 어린이들의 사회적, 문화적 감수성을 높여주고 꿈을 키워주기 위한 “서울 나들이” 프로그램(전남지역), 교회와 다문화봉사단체를 중심으로 다문화실무자네트워크, 다문화 관련 포럼 및 자료집 발간, 상담, 교육사업, 취업알선, 한국 친정엄마가족 맺기 등으로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다.

## 2. 중독사업

우리 사회에 알코올, 약물과 같은 물질중독, 도박, 컴퓨터게임과 같이 특정 행위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어 본 법인 중독사업부에서는 이런 현실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 찾는 사업을 하고 있다.

## 3. 연구사업

한국교회가 더욱 폭넓고, 효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심김과 나눔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디아코니아(섬김, 봉사)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부록 3

## 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 -IV. 제2차기본계획개요-

2012.12.

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 IV. 제2차 기본계획 개요

### 1 수립 방향

- 인구·가족·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이 사회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패러다임 재구성

구분	〈 태 동 기 〉	〈 발 달 기 〉
인구	국제결혼 증가 다문화가족 증가	국제결혼 비율 안정화 다문화가족 지속 증가
가족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 자녀 출생, 초기 발달 진행 결혼 및 가족생활 갈등 발생	결혼이민자의 사회 진출 확대 자녀세대 성장 가족 해체 증대 가능
사회	사회적 관심 형성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태도 확산 및 갈등 우려

-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위한 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 적응** 중점 지원 및 시혜적 지원을 확대했으나, **다문화가족을 취약계층과 동일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 고착화** 문제

⇒ **다문화가족이 사회발전 동력이 되도록** 능력을 개발하고, 상대의 문화를 서로 존중해주는 **가족문화, 사회분위기 조성**

- 그간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 **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도모

- 다문화가족정책은 결혼이민자 증가에 적극 대응하여 **짧은 기간 내 급격한 발전**을 거두었으나, **중복 지원, 일회성 사업** 등 지적

⇒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처, 지자체간 협력·조정 강화**



## 2

## 비전과 목표

## 비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 목표

-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정책 과제 (86)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7)	1-1.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1-2.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15)	2-1.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2. 한국어능력 향상 2-3.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2-4.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2-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16)	3-1.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3-2.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3-3. 소외계층 지원 강화 3-4. 피해자 보호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16)	4-1.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4-2. 직업교육훈련 지원 4-3.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4-4.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21)	5-1. 인종·문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5-2.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5-3.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5-4.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5-5. 다문화가족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정책추진체계 정비 (11)	6-1.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6-2.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6-3.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 3 제2차 기본계획 개요

- 향후 5년간 총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 추진

구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추진 기간	2010~2012년 (3년간)	2013~2017년 (5년간)
과제 구성	5대 영역 61개 세부과제	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
추진 기관	11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경찰청, 공정위, 여성가족부 및 국무총리실)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국방부, 복지부, 고용부, 외교부, 경찰청, 방통위, 법원, 여성가족부 및 국무총리실)

- 환경 변화 및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 도출

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을 고려, 다문화가족에 대한 합리적 지원 추진

- 가족 구성원간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평등한 가족문화 구축 및 가족서비스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 및 학교생활 지원과 군대 및 사회의 다문화 이해 제고 중점 추진
-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는 사회통합적 차원의 서비스를, 일정기간 경과 시부터는 취업 등 강화
- 다문화가족 정책의 공고화를 위해 정책추진 체계 구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평가 강화
- 주요 국제결혼 상대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 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

## V. 정책 과제

###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 평등한 부부 및 소통적인 가족관계 조성 등 건강한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쌍방향 언어 및 문화 이해 제고

#### 1 상대방의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주요 상대국과의 결혼시 상대국 제도·문화 교육 강화**
  - 결혼이민자에 대한 '현지 사전교육'을 강화 운영하고,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사증발급과 연계(여가부, 법무부)
    -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는 '11년 도입/ 현지사전교육은 '08년에 도입하여 현재 3개국(베트남, 필리핀, 몽골)에서 시행 중이며, 캄보디아, 태국 등 현지사전교육 국가 확대 검토
  - '행복드림 Happy Start 프로그램' 강화(법무부)
- 한국인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강화**(여가부)
  - 문화간 차이를 바탕으로 한 가족관계에 관한 부부단위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 가족생애주기별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정체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운영
    - \* 예) 결혼 적응가·영유아기·학령기 부모- 청소년기 부모-노후 준비

- 남성결혼이민자와 여성 한국인 배우자 가족, 귀화자로 구성된 가족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 추진 및 정책수요 파악**(여가부)
  - 귀화자 간 결혼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어려움, 생활문제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정책과제 개발
  - 소외계층 중심, 특정국가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시 **일방향적 한국문화 주입에서 상대방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모니터링**(여가부, 문화부)
  -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활용한 부모-자녀 관계 프로그램 추진

## 2

###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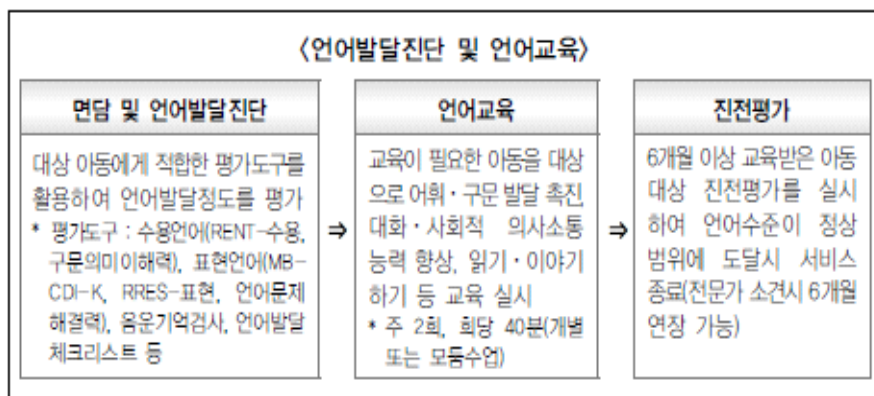
- 아리랑TV에 문화다양성 관련 **다언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장기적으로 기존 방송국의 특정 시간대를 구매하여 **케이블 다문화방송 추진**(문화부)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등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의 **쌍방향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확대**(문화부)
- **다양한 문화 공존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 및 홍보**(문화부)

##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특별한 서비스보다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국어 능력 향상, 학교 정보 제공, 입학 전 적응 등 지원

### 1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건강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 그림, 도표를 이용하거나 번역하여 문해력(Health Literacy) 향상방안 실시(복지부)
  - \* Health Literacy : 기본적인 건강정보를 취득하거나 교환하고 이해하여 건강과 관련된 적절한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 \* 미국은 문해력 향상을 위해 Affordable Care Act(health care reform law of 2010), the National Action Plan to Improve Health Literacy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the Plain Writing Act of 2010) 마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 발달, 의사소통 능력 등 언어교육 확대(여가부, 문화부)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교육 단계적 확대(교과부, 여가부)
  - \* (교과부) 이중언어강사(유치원·초·중·고) 양성 확대, (여가부) 이중언어강사는 단계적으로 교육부의 이중언어교육으로 통합

- 결혼이민자에게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의 양육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 지원(여가부)
  -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성장, 부모-자녀 관계 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 지도), 가족상담 등 지원

## 2

### 한국어능력 향상

- 다문화가족 자녀 등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유**(문화부)
  - \* 현재 개발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국립국어원)을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 다문화배경을 가진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KSL : Korean as a Second Language) **운영**(교과부, 문화부)
  - 다문화학생의 다수 재학학교에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에 운영**
  -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한국어 교재\***, **학생용 진단도구(Junior-TOPIK) 보급**
    - \* 학교급별(초·중·고) 한국어 수준에 따른 단계별 한국어 교재 개발('12.7~'12.12)

## 3

###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집·유치원의 특별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시**(여가부, 문화부)
  - \* 국어(한국어) 과목의 경우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
-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 사전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학교를 전국적으로 운영**('12년 26개소/교과부)
- 초등학생 이하 자녀에게 알림장 읽어주기, 숙제지도 등 **‘자녀생활서비스’ 확대**(여가부)
-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진학 또는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초기적응 프로그램 ‘Rainbow School’ 운영**(여가부)



#### <Rainbow School>

- 교육대상 : 외국출신 청소년(9세 ~ 24세)
- 교육과정 : 전일제(주 5일, 4개월), 방과후과정, 여름과정, 주말과정
- 교육내용 : 한국어, 한국생활문화, 정체성, 편입학 및 진로지도, 취업연계 등

## 4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교과부)
  - **글로벌 선도학교**(150개교)를 운영하여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 및 교과학습 집중 지원
    - \* 다문화가족의 자녀 10명 내외 재학학교 중 지정하여 '12년 150개교 운영
  - 기초학습·상담을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 지원**
- 다문화학생의 **진로·진학지도 지원 강화**(교과부)
  - 언어, 수학, 과학, 예체능 등 **영역별 우수 학생 육성**(연 300명)
  - **고교 직업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및 요리, 미용 등 **직업교육과정 운영 확대**
    - \* 대안학교 : '12년 서울, 충북 → '13년 인천(신설)
    - \* 직업교육과정 : '12년 부산, 경기, 경남 운영

## 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외국출신 자녀가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적 취득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지역 교육청이 협력하여 **입학절차를 안내하고 예비학교 및 정규학교 조기 진입 유도**(교과부, 법무부)
  - \* 시·도교육청의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가 다문화학생의 예비학교 및 정규학교 배치를 책임지고, 출입국 관리소와 수시 연락체계 유지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국제교류 등의 일정 비율은 **다문화 가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여가부)
-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인 **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 방안 모색**(여가부)

###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입국 전부터 한국생활 정착시까지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1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 국제결혼 사증심사 강화(법무부)
  - 경제적 원인에 의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사증심사시 **초청자의 실질적 피초청자 부양가능여부 심사**
  - **개별 인터뷰(한국인 배우자 인터뷰 또는 부부 인터뷰) 실시** 등 혼인의 진정성, 혼인경력, 신체·정신적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실질적 심사 강화**
    - \* 대만 TECO 사례 : 베트남에서 부부 인터뷰(개별 인터뷰) 실시
    - \* 여성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가 중 이혼율이 높은 국가(중국, 베트남)에서 우선 실시
- 중국, 필리핀 등 주요 상대국 정부와의 국제결혼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국제결혼 이민관 파견 검토**(여가부)
  - \* 주요결혼상대국 주한대사협의체(8개국) 회의, 국가간 업무협약시 국제결혼 이민관 파견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 집중(베트남의 경우 파견에 대해 감사표명, 파견되지 않은 필리핀 국가 등에서는 파견 요청)
- 국제결혼 전 **신상정보 제공 제도 정착화**(여가부)
  - 신상정보 제공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등 규제의 재검토를 통한 신상정보 제공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맞선 전에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양당사자의 신상정보 서류를 번역·제공해야 함
- 무등록 영업, 허위·과장 광고 등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단속활동**(여성가족부·지자체 합동 연2회 점검) 및 불법·탈법 혐의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동향조사 강화**(여가부, 법무부)
  -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불법·탈법 혐의 중개업체의 외국인배우자 초청현황, 특이사항 등을 입력함으로써 결혼사증 발급 시 적극 활용



## 2

###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 양성·개인별 맞춤 지원(여가부)
  -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 한국어 능력, 자녀 유무 등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 한국생활 안내, 생활고충 상담 등을 위한 **다누리 콜센터 운영(1577-5432/ 10개 언어 지원)**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여가부)**
- 새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에게 **각 부처·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족 서비스 종합안내지’ 발송(8개언어→10개언어)**, **다국어판 정보매거진 ‘Rainbow+’ 제작·배포(10개언어, 분기별 7만부/여가부)**
  - \* 독일 이민·난민청은 각종 유인물과 뉴스레터를 통해 연방·주정부 수준의 이민자 통합 관련 서비스 (언어 교육, 구직활동, 이민자 통합 프로젝트 등) 소개
- 다문화가족지원 포털사이트 **‘다누리’ 운영(8개언어→10개언어)**, 한국생활·다문화가족정책 정보제공 및 1:1 상담 지원(여가부)

## 3

### 소외계층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다문화가족의 수급현황 파악(복지부, 여가부)**
  - \* 현재 결혼이민자 중 임신하였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 \* 대부분 선진국은 사증발급시 자국의 사회복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과 주거를 갖추어야 하거나, 재정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단 입국한 결혼이민자에게는 현금성 급여 외 의료보험 등 통상적 사회보장제도는 적용 지원
- 다양한 정부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여가부)**
  - \*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제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등으로 결혼이민자가 혜택받지 못하는 제도, 사업 등 발굴
- 취업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 대상 돌봄 서비스 및 한부모 가족 지원 등 **가족차원의 돌봄서비스 지원(여가부)**
  - 맞벌이 다문화가족 부부자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맞벌이 다문화가족 취약 아동에 대한 돌봄과 보호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 등 실시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시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농식품부)
  - \* 주택개량 사업시 다문화가족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 개정('12.12월)

## 4

### 피해자 보호

- 국제결혼 중개업 피해예방을 위한 **‘이용자 사전교육’** 실시 및 **피해 상담 지원** (여가부)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2.8.2)
- 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상담언어 서비스 단계적 확대**(여가부)
  - 상담원 역량 강화를 통해 상담의 질 제고(년 2회)
    - \* 상담전반에 대한 기본소양 및 전문교육(최신 상담기법 및 전문지식 공유 등)
  - 야간상담 언어 확대를 통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12년 : 10개 국어)
-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보호, 상담·의료·법률·출국 등 지원, 치료회복 등을 통한 인권보호를 위해 **이주여성쉼터 단계적 확대**(여가부)
  - \* ('12) 시·도별 1개소씩(서울, 경기 각 2개소) 18개소
-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거주와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을 위한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내실화**(여가부)
  - \*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1개소), 이주여성 그룹홈(1개소)

## 4

##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취업 및 참여 활성화

## 1

##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 해외마케팅 인력,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립공원 자연해설사 등 **모국에서의 경력, 다국어능력 등을 활용한 일자리 확대**(여가부, 복지부, 문화부)
  - \* 해외마케팅 인력 : 무역협회, KOTRA에서 결혼이민자를 전문인력으로 육성, 취업 지원
  -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출신 의료관련 인력을 코디네이터로 양성, 병원 등에 연계('12년 20명 지원),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13년 1월 시행)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지원시 결혼이민자 참여 확대**(고용부, 행안부, 지자체)
-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고용부)
- 자녀양육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및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적극 알선**(고용부, 여가부)

## 2

## 직업교육훈련 지원

-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적합한 특화훈련과정을 확대·운영하고 참여자에 대해 자비 부담(25~45%)을 면제**(고용부)
-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실시**(여가부)
-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직장체험인 **인턴 등 징검다리 일자리 지원**(고용부, 여가부)
  - \* 결혼이민여성 인턴 채용 기업 또는 인턴자에게 1인 총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최대 6개월) 지원

- \* 외국인력지원센터, 고용센터 등에 통역 및 고용서비스 인턴 등 채용시 결혼이민자 우대(가점 부여)
  - \* 정부지원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결혼이민자 인턴 채용
-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를 위해 정착단계별 **기초농업교육** 실시하고 지역농협 등의 **전문 영농교육시 결혼이민자 참여 확대**(농식품부)

### 3

####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 결혼이민자 대상 **리더십, 단체 활동가 교육 실시**(여가부, 행안부)
- **운전면허 학과교육을 통한 면허취득 지원**, 다문화가정의 안전한 사회정착 및 법질서 준수 의식 제고(경찰청)
- 모국에서의 **자격 인정 방안 마련**(각 부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활용**,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원격 교육프로그램** 마련(여가부)

### 4

#### 사회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지역협의회 등에 결혼이민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여가부, 행안부)
  - \*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결혼이민자 참여 현황(12.6) : 61.9%
  - \* 경기도 등은 관련 위원회에 결혼이민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일본의 외국인 집주지역(가와사키시나 하마마츠시)은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외국인시민회의 등 개최
- 결혼이민자가 단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시 결혼이민자 활동가 비율이 높은 경우 가점 부여**(여가부, 행안부)
- **결혼이민자 재능기부 등 다문화가족의 자원봉사 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개선(여가부, 문화부)
- 문화예술모임, 학부모모임 등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 활성화**(여가부, 문화부, 법무부)
  - \* 결혼이민자 학부모모임 별도 운영 등을 통해 모임 참여 경험 확대
  - \*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 이주민 문화예술 자조모임의 활동 지원

## 5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일반국민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 1

## 인종·문화 등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

- 인종·종교 등 다양한 문화에 대한 ‘차별금지법’ 마련 및 차별적 법·제도 개선  
(여가부, 법무부)

한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에 포함된 것에 버금가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포함시켜 국내법이 이 협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 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차별금지사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차별의 정의를 검토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CERD para, 10).

한국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비국민에 관한 일반권고 제30호(2004년)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명시된 권리 향유에 있어 국제법 하에 인정된 정도까지 국민과 비국민간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ERD para, 14).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 제정 및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기초가 되는 **문화다양성 정책강화 법령 및 조항 마련**(문화부)
  -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 \*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 국내 비준(10.7월)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문화정책의 지향으로서 문화 다양성 반영
-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조사·발표**(매 3년)하여 현황 모니터링(여가부)

## 2

##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 문화예술, 방송 등 콘텐츠 제작 관계자에 대한 안내서 제작·활용(문화부, 방통위)

- 타 문화 존중 및 이해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 문화예술·방송·영상·미디어 분야의 콘텐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 \*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관련 기관에 안내서 비치, 방송제작 관계자,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등 대상 안내서 배포 및 관련 교육 기회 확대
- **표현(창작)물에 대한 국내외 문화다양성 관련 규정\* 분석 및 검토**를 통해 표현(창작)물에 의한 피해사례 발생 방지(문화부)
  - \*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언론보도 지침과 피해 사례 등
  - \* 프랑스: 프랑스 텔레비전의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동계획(PDR)', 공영방송 내 '통합 및 다양성 위원회' 설치를 통해 인종적 다양성 반영 장려 및 언론인 대상 다문화교육 실시
  - \* 독일: '사회통합계획('07) 내 미디어를 통한 문화적 다양성 증진 계획 포함
-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문화·인종에 대한 **차별적 표현 모니터링 강화 및 조치**(문화부, 방통위)
  - \* 인터넷 게시물 사법 모니터링 실시('12.11~1.14), 조선족 비하 게시물 등 5건 삭제, 6건 이용해지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다문화 관련 TV 프로그램 제작 지원**(방통위)
  - EBS 관련 프로그램 제작시 예산 지속 지원
    - \* 예산지원 현황: ('09) 6억 → ('10) 20억 → ('11) 24억 → ('12) 24억 → ('13) 24억
  -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공모사업 중 '공공·공익성 프로그램 분야'에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선정 확대
- 문화다양성 관련 **문화자원의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추진**(문화부)
  - 문화다양성 자료\*에 대한 체계적 발굴·수집·보존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접근 기회 제공
    - \* 이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결과영상, 사진, 미술작품 등, 세계의 멸실·소멸되어가는 전통 문화, 관련 정부 사업 추진 결과물 등 포괄
- 능동적이고 긍정적 인식 유도를 위해 모든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활용 홍보**(여가부, 문화부)
  - 연령별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블로그, SNS, TV프로그램, 캠페인 등 실시



- **일반국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 확대**(여가부, 문화부)
  - 일반국민·다문화가족 멘토-멘티 활동, 일반·다문화 청소년이 함께하는 봉사활동프로그램 등 지원
  - \*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 이주민과 일반국민 간 문화예술을 매개로한 상호교류 지원(12년 6개 지역 지원, 추후 확대), 일반 및 이주배경청소년 통합캠프 실시(400명)
-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 제고**(문화부)
  - 교육 대상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교안 및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매뉴얼 제작·배포를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 과정 체계화
  - \* 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법무부), 전국 교대 및 초·중·고(교과부), 이주민 관련 단체(민간) 등에 배포
  - 기존에 개발된 교재나 콘텐츠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활용도 제고 및 **다문화 관련 차별적 요소 시정**
  -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문화분야 전문인력, 교사 등 교육 매개자 및 언론, 기업, 정책영역 등 **핵심인력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3

####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 **(공무원)** 17개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원(58개 과정), 법무연수원 등의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확대(여가부, 행안부, 법무부)
  - 지자체·경찰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이민정책 이해 과정을 중앙부처 공무원까지 확대
  - \* 대만 타이페이시 : 결혼이민자(신주민)의 배우자와 그 가족, 행정기관 담당자, 교사, 자원봉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신주민)와의 기본적 의사소통과 이해, 출신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신이민 본국언어 및 문화연수'반 개설

- **(경찰 등)** 특정 직업계층의 다문화 이해 강의 개설 및 강사 지원(여가부, 경찰청)
  - \* 경찰교육원 등에 과정(과목) 개설, 교재 및 강사 등 지원 추진
- **(다문화 시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등 다문화 관련시설 종사자의 다문화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여가부)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관리자·신입직원 등 대상별 다문화 감수성 교육 실시(770명),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 양성(100명)
- **(그외 시설 종사자)** 지역의 다양한 문화기반시설, 지역농협 및 복지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교육 실시(여가부, 문화부, 복지부, 농식품부)
  - \* 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

#### 4

####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 일반학생-다문화학생 간 **상호 이해 교육 강화**(교과부)
  -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외국의 역사와 문화이해, 역할놀이 등)에서 다문화 상호 이해 활동을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 유네스코의 CCAP(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
- 다문화교육 내용을 향후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유치원 교사용 지도서 및 초·중등 교과서에 반영하여 개발·보급**(복지부, 교과부, 문화부)
  - \* 어린이집·유치원(3~5세 연령별 누리과정)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다문화교육 내용이 범교과 학습요소로 반영
  - \*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유치원 교사용 지도서 및 초·중등 교과서 보급계획 : ('13) 유, 초1·2, 중 → ('14) 초3·4, 고 → ('15) 초5·6
  - \* 미국, 호주 등은 1970년대 이후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공교육 내용 재편성



- 초등학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다양성 교구재 '**다문화 꾸러미**' 활용을 통해 쌍방향 교류·체험 기회 확대(문화부)
- **교원 양성·연수 과정 개선 등을 통해 교원의 다문화 이해 역량 강화**(교과부)
  - 예비 교원의 다문화 이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범대 다문화 이해 강좌 운영 지원
  - 현직 교원 연수과정을 기초단계(일반교원 권장)에서 심화단계(글로벌 선도학교 교원 필수)로 체계화하여 교사의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 \*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다문화 이해 연수를 위한 사이버 과정 운영('13)

## 5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 **간부 대상의 각종 교육과정(양성 및 보수교육과정 등) 및 일반장병 대상 다문화 이해와 수용 제고 관련 교육 실시**(국방부)
- 각 군 규정에 '**다문화장병 차별행위금지**와 **고충 우선처리**' 명문화(국방부)
  - 인종, 피부색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행위 금지
  - 다문화와 관련된 차별 등의 고충 처리시 우선 처리에 대한 상관 책임 규정 명문화
- **소수 종교자(이슬람교도, 힌두교 등)에 대한 종교활동 등에 대한 배려 제공** (국방부)
- 입대에정 다문화자녀의 **안보관 및 친군(親軍)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국방부)

